
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문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72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30.

발 의 자 : 김문수 · 정진욱 · 조인철
박지원 · 정을호 · 이광희
주철현 · 김우영 · 전용기
김현정 · 박민규 · 이수진
정준호 · 조계원 · 최혁진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로 지방소멸과 대학위기의 우려가 사회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국가 균형발전 및 대학교육 혁신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. 대학 간 통합과 협력이 다각도로 이루어지는 추세이지만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부담이 크고, 각 대학이 가진 고유한 교육·연구 특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.

이에 대학 간 통합의 유연성을 높이고 각 대학의 고유 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각 대학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는 연합형통합대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, 대학 간 자율적 협력을 촉진하고 고등교육의 발전과 지역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4조의2 신설).
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연합형통합대학의 인가·운영 등) ① 교육부장관은 2개 이상의 국립대학 또는 공립대학이 하나의 국립대학 또는 공립대학으로 전환하는 경우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른 산업인력의 양성과 효율적인 연구개발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해당 대학을 연합형통합대학으로 인가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연합형통합대학(이하 “연합형통합대학”이라 한다)은 지역별 특성·교육여건, 지역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각 대학별로 자율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대학의 운영·관리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총장을 각각 둘 수 있다.

③ 연합형통합대학은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대학의 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연합형통합대학위원회를 둔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형통합대학의 지역특화산업 및 초광역협력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, 교육·연구 및 산학연협력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⑤ 그 밖에 연합형통합대학의 인가·운영, 연합형통합대학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4조의2(연합형통합대학의 인가·운영 등) ① 교육부장관은 2개 이상의 국립대학 또는 공립대학이 하나의 국립대학 또는 공립대학으로 전환하는 경우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른 산업인력의 양성과 효율적인 연구개발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해당 대학을 연합형통합대학으로 인가할 수 있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연합형통합대학(이하 “연합형통합대학”이라 한다)은 지역별 특성·교육여건, 지역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각 대학별로 자율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대학의 운영·관리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총장을 각각 둘 수 있다.</u> <u>③ 연합형통합대학은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대학의 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</u>

연합형통합대학위원회를 둔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형통합대학의 지역특화산업 및 초광역협력산업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, 교육·연구 및 산학연협력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⑤ 그 밖에 연합형통합대학의 인가·운영, 연합형통합대학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